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거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. 8.27.(목) 10:0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20호

나. 제 출 자 : 윤영희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
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지급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급금액 규정(안 제4조)
- 라. 신청 및 지급방법(안 제6조)
- 마. 환수조치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8. 19. ~ 8. 24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O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, 금액 등을 규정하고
 - 안 제6조는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
 -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환수조치,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함.

※ 우리 구 90세 이상 연령별 인구 현황

2020. 6. 현재(단위: 명)

| 연령 | 101세 이상 | 100세 | 99세 | 98세 | 97세 | 95세 | 94세 | 93세 | 92세 | 91세 | 90세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인구수 | 158 | 15 | 23 | 29 | 39 | 56 | 60 | 98 | 142 | 138 | 191 |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O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,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 등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저출산・고령사회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